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사업면적	(㎡)	
	사업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 [] 주거산업융합지구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안자(공공주택사업자)		

- 가. 본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 1)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로 변경될 수 있음
- 나. 본인은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자) 귀중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소유권 현황		소재지(공유여부)	면적(㎡), 동수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	(공유여부)	㎡
		(공유여부)	㎡
		(공유여부)	㎡
	건축물 (총 필지) 등기상 건축물 지분 ()	(허가여부)	동
		(허가여부)	동
		(허가여부)	동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유의사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때는 대표자 1명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표기합니다. 2.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 용도) 등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